

NCS교육지원 운영위원회 운영규정

전문제정 2019.05.22. 개정 2020.03.30. 개정 2022.04.04.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NCS교육지원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구성)

- ①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교무처장이 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2.04.04.>
- ②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-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- 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무팀 직원으로 한다.<개정 2020.03.30., 개정 2022.04.04.>

제3조 (심의사항)
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NCS기반 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에 관한 사항
2. NCS기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
3. NCS기반 교육품질관리 및 교육성과관리에 관한 사항
4. NCS기반 교육여건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
5. 기타 NCS관련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

제4조 (회의 소집 및 회의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,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
-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부 칙(2019.05.22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9년 05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0.03.30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0년 0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2.04.04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2년 04월 04일부터 시행한다.